

- 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에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, 아울러 청약 당첨자로 선정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9조(주택의 공급계약)에 의거하여 전산검색 및 세대주/세대원 등의 기타 적격여부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만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당첨되신 고객께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내방하시어 사전서류접수 후 부적격 사항 발견 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공급계약 일정 안내

구 분	기 간	장 소
공급계약 및 옵션 계약	2022.01.25(화) ~ 01.27(목) 3일간 (10:00 ~ 16:30)	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 견본주택 (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63-9) ※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.

- ※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기체결 된 공급계약은 취소되며, 모든 귀책사유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입주자격확인을 위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계약서류로 대체되어 사업주체에서 보관합니다.
- ※ 사전서류검수 결과 적격 또는 부적격 소명 완료 고객에 한하여 공급계약 전 계약금(공급금액의 10%) 입금하시기 바라며, 입금 후 부적격 사항에 해당 될 경우 고객께서는 환불 조건 및 절차(환불기간, 이자 미지급 등)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- ※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품목 계약이 함께 진행 될 예정이며, 플러스 옵션은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
### ■ 공급계약 방문예약 안내

예 약 처	예 약 일	예 약시간	비 고
견본주택 유선상담실 032-555-0125	2022.01.18(화)	11:00 ~ 17:00	30분당 5팀 예약가능

- ※ 사전서류접수 결과 입주자격검증이 완료 된 세대에 한해 유선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.
- ※ 유선 방문예약 시 선착순으로 신청되므로 희망예약시간이 마감될 경우 예약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※ 유선 방문예약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분양대금·발코니 확장·플러스 옵션 납부 계좌 안내

구 분	은 행	계 좌 번 호	예 금 주	비 고
분양대금(계약금)	KB국민은행	067501-04-110057	동도디앤씨(주)	분양대금의 10%
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				계약시 10% / 입주시 90%

- ※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정확히 확인하시어 착오 없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무통장 입금 시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 
[예시 : 101동 201호 : '1010201홍길동' / 102동 702호 : '1020702홍길동']
- ※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(입금증, 계좌이체증 등)을 제출해야 합니다.  
[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(현금 또는 수표) 수납 불가, 신용카드 결제 불가]
- ※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- ※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공사비는 계약금,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되 잔금은 입주(열쇠 불출일)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- ※ 납부 약정일이 변동(연기 등)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,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.

### ■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
	필수	해당자	
공동서류 (특별공급 당첨자 포함)	○		•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일체(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)
		○	•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
	○		• 계약금 입금증(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)
	○		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
	○		•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(아파트 계약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접수에 한하여 사용가능
		○	•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•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
	○		• 전자수입인지(인지세) - 인지세 가산세 개정(2021.01.01.부터)으로 분양계약 시 인지세 납부 필요. 미납 시 기간에 따라 최대 300% 가산세 납부 - 전자수입인지 구입처(e-revenuestamp.or.kr)·우체국·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 (※ 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 : 15만원)
부적격 사항 소명확인 통보자	○		• 무주택 소명서류(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) ※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무허가 건물확인서,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• 당첨사실 소명서류(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)
제3자 계약자 신청서 추가사항	○	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건물주택 비치)
	○		• 계약자의 인감증명서(아파트계약 위임용) 및 인감도장
	○		•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(또는 대리인 서명)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23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)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
### ■ 계약 시 유의사항

-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.
-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됩니다.
-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
  -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(특별공급 당첨자 포함)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  - 주민등록번호 위조,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,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  -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-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  - 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.
-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,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.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“부동산거래신고” 하여야 합니다.
- 당첨자는 당첨 동·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(계약금)로 계약금 납부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계약조건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9조에 준합니다.